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 206

제출년월일 : 2016. 4. .

제 출 자: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
-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.
- 대한적십자사 조직이란「대한적십자사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함.

나. 활동 지원근거(안 제3조)

○ 재난구호 활동, 사회봉사 활동, 보건의료 활동, 안전교육 활동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.

다. 사업비 신청 및 정산(안 제4조)

○ 사업 신청,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름.

라. 표창(안 제5조)

○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표창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5. 12. 22 ~ 2016. 1. 12) 결과, 제출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5) 법제심사 : 일부문구 수정 반영

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대한적십자사(이하 "적십자사"라 한다) 조직"이란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 (하부조직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 - 2. "적십자사 봉사회원"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3. "적십자사 사업"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제3조(활동 지원)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재난구호 활동
 - 2. 사회봉사 활동
 - 3. 보건의료 활동

- 4. 안전교육 활동
- 5. 지역사회 복지증진 관련 활동
- 6.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
- 7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활동
- 제4조(사업비 신청 및 정산)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,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5조(표창)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 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조례 제3조(활동 지원)

- 군수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.

4. 작성자

작성자	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비 호
연락처	(033)330 - 2150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-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 -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- 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 - 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 - 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 - 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 - 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